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권국”을 “인권국, 국제법무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

제11조의2제2항제8호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 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

행 및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 (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5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 단 중 “50명”을 “51명”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73”을 “7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6”을 “7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6”을 “738”로 하고, 검사 계 “29”를 “30”으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9”를 “1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21”을 “22,9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902”를 “22,91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96”을 “22,708”로 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5명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개 과	2명
3) 법무실 1개 정책관등	1명

4) 국제법무국	1명
5) 국제법무국 2개 과	9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 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정책국, <u>인권국</u>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 <u>인권국, 국제법무국</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법무실) ①·② (생 략)	제9조(법무실)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 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u>	<삭 제>
9의2. <u>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 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u>	<삭 제>
9의3. <u>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 응에 관한 사항</u>	<삭 제>
10. <u>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 (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u>	<삭 제>

<u>11.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 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연구·간행 및 국제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u> <u>12.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에 관한 사항</u> <u>13.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u> 14. ~ 29. (생략) <u><신설></u> 제11조의2(인권국) ① (생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8. (생략) <u>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 도·감독</u> 9. ~ 14.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14. ~ 29. (현행과 같음) <u>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 ·감독</u> 제11조의2(인권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14.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u>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u> <u>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 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u>
--	--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
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
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
(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
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연구·간행 및 국제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
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
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
퍼센트-----

-----.

② -----

-----.

----- 51명-----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 표 7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 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773</u>		<u>786</u>	+13	
일반직 계	.		.		.		
	.		.		.		
	.		<u>736</u>		<u>748</u>	+12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		.		.		
	.		.		.		
	.		<u>726</u>		<u>738</u>	+12	
검사 계	.		.		.		
	.		.		.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u>29</u>		<u>30</u>	+1	
	.		<u>9</u>		<u>10</u>	+1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2,921</u>	• <u>22,933</u>	+12
일반직 계	<u>22,902</u>	<u>22,914</u>	+1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696</u>	<u>22,708</u>	+1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